

조교인사 규정

제정 1994. 12. 20.

제28차 개정 2023. 12. 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제88조의2에 의한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조교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11.)

제2조(관리부서) 조교인사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조교와 행정조교의 정원이 배정된 대학(원)장 또는 행정부서(이하 “부서”라 한다)의 장이 관장한다. 다만, 제3조의2 제2호 연구조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관장한다.

[전문개정 2023.12.12.]

제3조(자격) ① 조교는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졸업 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임용한다. (개정 2002.7.31) 항 개정(2008.4.7, 2022.04.26)

1. ~ 2. 삭제 (2022.04.26.)

② 대학(원) 또는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제1항의 자격에 특별한 자격을 부가하여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 (항 신설 2008.4.7.) (개정 2022.04.26.)

제3조의2(조교의 종류) 조교는 보조하는 사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육조교 : 각 대학(원)에 소속되어 교육·실험실습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임용된 조교
2. 연구조교 : 「대학원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규정」에 의한 연구조교장학금 수혜자로서 각 대학(원)의 학과에서 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선임된 조교
3. 행정조교 : 부서에 소속되어 학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임용된 조교

[전문개정 2023.12.12.]

제4조(임용) ① 조교의 신규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조교 임용 예정 대학(원)장 또는 부서장의 제청으로 본교 계약직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4.8.25. 2015.02.24., 2018.01.23., 2022.04.26)

② 조교가 임면된 경우 해당 대학(원)장 또는 부서장은 그 임면사항을 교무연구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9. 2015.02.24., 2018.01.23., 2019.12.02., 2022.04.20., 2022.04.26)

1. ~ 2. 삭제 (2022.04.26)

③ 삭제 (2022.04.26)

제5조(정원) 대학(원) 또는 부서의 교육조교, 행정조교 정원은 편제정원, 재학생 수, 학과 및 부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22., 2023.09.11., 2023.12.12.)

② 삭제 (2015.02.24.)

② 삭제 (2023.09.11.)

③ 삭제 (2021.11.22.)

④ 삭제 (2021.11.22.)

- ⑤ 삭제 (2013.6.26)
- 1. 삭제 (2013.6.26)
- 2. 삭제 (2013.6.26)
- 3. 삭제 (2013.6.26.)

제6조(직무) ① 조교는 소속 대학(원)장 또는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제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6., 2023.12.12.)

- 1. ~ 5. 삭제 (2022.04.26)
- ② 조교는 교무연구처장의 지시를 받아 교내에서 실시되는 시험에 관한 감독과 학사에 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6.)

제6조의2(업무분장) 조교는 소속 대학(원)장 또는 부서장의 주관으로 분장한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 신설 2022.04.26]

제7조(임용기간) ①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4.3. 2015.02.24., 2021.11.22., 2023.09.11.)

- ② 삭제 (2021.11.22.)
- ③ 재임용이 필요할 때에는 대학(원)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1회(1년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단, 재임용을 포함한 총 임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10.24, 2004.8.25, 2007.11.8., 2014.4.9, 2015.02.24., 2017.03.28., 2018.01.23., 2021.11.22., 2022.04.26)
- ④ (항 삭제 2006. 4. 3) (항 변경 2013.6.26)
- ⑤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가 재임용되지 않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항 변경 2013.6.26)
- ⑥ 임용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 희망일 30일 전에 소속 대학(원)장 또는 부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3.6.26.) (개정 2019.12.02., 2022.04.26)

[제목개정 2021.11.22.]

제8조(재직기간) 삭제 (2021.11.22.)

제9조(근무평정) ① 대학(원)장 또는 부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조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02, 2022.04.26)

- ② 조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본교 계약직에 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01.23., 2019.12.02, 2022.04.26)
- ③ 삭제 (2022.04.26)
- ④ 삭제 (2022.04.26)

제10조(복무) ① 조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소속 대학(원)장 또는 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04.26)

- ② 그 밖에 조교 복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교 계약직에 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04.26)
- ③ 삭제 (2022.04.26)
- ④ 항 삭제 (2007.11.8)

제10조의2 삭제 (2022.04.26)

제11조 삭제 (2022.04.26)

제12조(조교재임용심사위원회) (조 삭제 2017.03.28)

제13조 삭제 (2022.04.26)

제14조 삭제 (2022.04.26)

제15조 삭제 (2022.04.26)

제16조 삭제 (2022.04.26.)

제1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계약직 인사 규정」, 「교직원 복무 규정」, 「교직원 인사 규정 운영 내규」 등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12.12.]

제18조(연구조교의 인사에 관한 특례) 대학원장이 관장하는 연구조교의 인사에 관해서는 제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12.]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재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 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1일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제8조 연임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5일 임용 및 임용부서 변경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교원인사위원회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은 제3조(자격)2호, 제4조(임면) 제1항 및 제7조(임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0월 1일 이후 조교임용(신규임용, 재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조교정원표에 의거 임용된 자의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453호, 2005.4.27)

이 규정은 200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330호, 2006.4.3)

이 규정은 200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570호, 2006.6.12)

이 규정은 2006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182호, 2007.11.9)

이 규정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471호, 2008.4.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 자격의 적용시점) 조교의 자격은 2008년 3월 1일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84호, 2008.7.7)

이 규정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714, 2011.6.2)

이 규정은 2011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875, 2012.6.21)

이 규정은 201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76, 2013.6.26)

이 규정은 201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69, 2014.4.9)

이 규정은 201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50, 2015.02.24)

이 규정은 2015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30, 2017.03.28)

이 규정은 2017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42, 2018.01.23)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7조 및 제8조 개정 이전에 임용된 조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예산팀-593, 2019.12.02)

이 규정은 2019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613, 2021.11.22)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57, 2022. 04. 20.)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613, 2022.4.26)

이 규정은 202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896, 2023.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조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교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부칙 (기획예산팀-2578, 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 대학(원)에 소속된 행정조교는 이 규정에 의한 교육조교로 분다.